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이선희 의원 외 17명)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
----------	-----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이선희 · 김하수 · 박권현 ·
박차양 · 조주홍 · 김영선 ·
박판수 · 황병직 · 이철구 ·
도기욱 · 김득환 · 박현국 ·
나기보 · 박영환 · 김대일 ·
김봉교 · 김희수 · 박미경 ·
의원(18명)

1. 제정이유

- 최근 환경의식 제고와 함께 힐링을 위해 자연친화적인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도내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제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관광환경조성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나.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시책수립 등 경상북도 생태관광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다.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 제6조)
- 라.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육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바.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9조)

3. 조 례 안 : 붙임 참조

4. 관련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4조, 제41조, 제42조

5. 관련부서 협의

-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 법제심사 : 의견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해당부서 검토의견 : 의견 없음

6. 참고사항

-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우수한 생태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관광환경조성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 지역 주민을 주축으로 지역의 전문가,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업, 경상북도, 시·군이 병렬적으로 협력하여 생태관광지역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개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태관광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생태관광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지원 방안
5.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및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 수립 이전에 도내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태관광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경상북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관련 홍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지역협의체의 교류 및 지원
5.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육성) 도지사는 도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 단체 등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0. 4., 2012. 2. 1., 2013. 3. 22., 2017. 11. 28.>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미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일체의 현상을 말한다.
5.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6. "소(小)생태계"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7.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8. "생태축"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서식공간을 말한다.

9. "생태통로"란 도로·댐·수중보(水中淤)·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10. "자연경관"이라 함은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11. "대체자연"이라 함은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14. "생태·자연도"라 함은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15. "자연자산"이라 함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17. "생태마을"이라 함은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18.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 11. 28.>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
2. 자연생태·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 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3.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6.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자연생태·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복구 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 3. 22.>

③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2.>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안의 마을

2. 생태·경관보전지역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다만, 산림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을 제외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마을이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 3. 2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2.>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법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법제담당)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실	직 급 성 명	행정7급 김 덕 환
입 안 주 무 부 서	정책기획관	통 보 (조 치) 일	2018. 10. 22.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부패 유발 요인 없음.		

평 가 항 목 별 검 토 자 료

□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체크리스트 (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준수부담의 적정성	×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높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	① 적당	해당없음.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① 구체적·객관적	해당없음.
			② 추상적·주관적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부적정	
	재정누수 가능성	×	① 명확	해당없음.
			② 불명확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	① 있음	해당없음.
			② 없음	
	공 개 성	×	① 예측가능	해당없음.
			② 예측곤란	
	예측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4 해당부서 검토의견 (환경정책과)

○ 의견 없음.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6조(재정지원), 제7조(생태관광지원센터), 제8조(도 대표생태관광지 지정·육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에 따른 비용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중기재정계획(2019~2023) 추계치(3.5%) 기준
- 생태관광 육성 활성화를 위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를 전제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생태관광지역육성	192	199	206	213	220	1,030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45	47	48	50	52	242
	소계(b)	237	246	254	263	272	1,272
□ 총 비용(a-b)		237	246	254	263	272	1,272

4. 재원조달 방안

- 동 조례는 약 254.4백만원의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추계되며, 주요사업은 국비지원 비율이 50%임에 따라 재정지원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118.5	123.0	127.0	131.5	136.0	636.0
도비	일반회계	35.6	36.9	38.1	39.5	40.8	190.8
시·군비		83.0	86.1	88.9	92.1	95.2	445.2
합계		237	246	254	263	272	1,272

5. 부대의견

-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국비를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6. 작성자

- 환경정책과 지방행정주사 서동섭 (3521)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대 상

-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생태관광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경상북도 생태관광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나. 비용추계 방법

- 생태관광 지역 육성 : 도 부담율 : 15%
- 2018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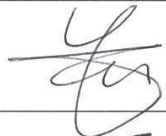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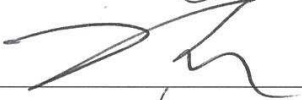
사 업 명	2018년 예산현황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62	81	24.3	56.7
○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162	81	24.3	56.7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구 분	내 용	비 고
조 례 명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 (비용수반)	○ 경상북도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운영(제7조) ○ 경상북도 생태관광지 지정·육성(제8조)	
담당부서 비용추계	○ 총 1,272백만원(국 636, 도 191, 시군 445) -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함. - 현재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지역육성, 생태마을 보전 활동비 지원사업을 기준으로 산출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관광환경조성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272백만원으로 도비 부담 191백만원(부서 비용추계액)이 소요되어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최근 국내경기 회복 지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의한 국비 매칭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등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 확대 시에는 유사·중복 사업의 구조조정, 비슷한 기구간 통폐합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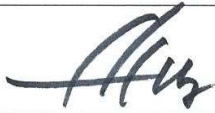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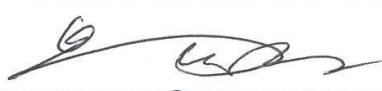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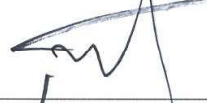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이 선 희		
김 하 누		
박 전 현		
백 지 현		
조 주 흥		
김 영 선		
박 판 숙		
황 병 직		
이 철 구		
노 기 욱		
김 은 환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박희국		
나기보		
박영환		
김재일		
김봉원		
최희수		
양미애		